

부산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나1364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0. 4. 2 선고 2019나1364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소193912 판결

전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변론 종결 2020. 1. 16

판결선 고 2020. 4. 2

제1심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4. 4. 17. 선고 2013가소193912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소장 부분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날'이라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이 판결 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다8005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저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분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4. 17. 원고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 정본 역시 공시송달에 의한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19. 3. 8. 소송기록에 대한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하고, 2019. 3. 13.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로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는 과실 없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판단되고,피고가 제1심 판결 선고 사실을 알게 된 2019. 3. 8.로부터 2주 이내에추완항소를제 기 하였으므로,피 고의 추완항소는 적 법 하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가 2004. 8. 31. 피고에게 전어 납품을 받기 위한 선수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의해서도 인정된다.

나. 원고는 위 선수금을 지급한 이후 피고로부터 전어를 전혀 납품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2004 . 8. 24. 부터 2004 . 10. 8. 까지 총 7회에 걸쳐 원고에게 전어,525kg을 납품하였는데 당시 전어의 시세를 고려하면 선수금에 해당하는 전어는 이미모두 납품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선장 C이 작성하였다는 장부(을 제2호증), C의 사실확인서(을 제6호증) 등이 있으나 이는 신빙성이 떨어지고,① 차용증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2004. 8. 31.자 입금확인서가 피고에게 회수되지 않은 점, ② 전어가 납품되었음을 보여주는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거가 전혀 제출되지 못하고 있는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전어를 납품한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20,000,000원 및 이 사건 소 장 부분 송달 다음 날인 2014.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태규판사 박혜민 판사 허성민